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0. 20 선고 2019가단2313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손계룡, 신혜진, 황예림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구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10. 20.

주 문

1. 피고와 E 사이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2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22,200,000원 및 이중 3,500,000원은 2018. 3. 3.부터, 5,000,000원은 2018. 3. 4.부터, 5,000,000원은 2018. 3. 5.부터, 5,000,000원은 2018. 3. 6.부터, 1,500,000원은 2018. 3. 7.부터, 800,000원은 2018. 4. 9.부터, 700,000원은 2019. 7. 3.부터, 700,000원은 2019. 8. 4.부터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1).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F, G, H 사이에 체결한 합의에 의하면, F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부동산 지분을 I에게 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전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위 부동산이 수용되고 F의 상속인인 E가 2018. 1. 19.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음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E는 I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수용보상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단52353 부당이득금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18. E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E는, 원고 B에게 43,312,778원 및 그중 42,857,142원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8. 5. 3.까지는 연 5%, 455,636원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 C에게 각 28,875,185원 및 그중 28,571,429원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8. 5. 3.까지는 연 5%, 303,756원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10. 5. 확정되었다.

나. E는 2018. 3. 2.부터 2019. 8. 3.까지 총 8회에 걸쳐 자신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계좌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200,000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2019. 9. 18. 원고들 일부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한 이후에 현실화되었지만, 그 당시 이미 위 판결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E의 불법행위 사실이 존재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에서 인정된 원고들의 E에 대한 손해배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E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할 당시 소유한 부동산은 없었고, 10,583원에서 16,632,997원 사이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소극재산으로 이미 원고들에 대한 총 101,063,15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할 당시 E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하여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는 이 사건 각 금원 송금행위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제기한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141조에 의하여 병합되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판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8706 판결 참조). 다만 그로 인하여 수익자는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나,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 등의 방법으로 이중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들의 E에 대한 각 채권액이 위 22,200,00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인 22,2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원고별로 피보전채권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권주의 원칙상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인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각 금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증여계약일 다음날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투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지급의무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그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민사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므로, 앞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민

별 지 목 록

1. 계좌번호 : 예금주 :

	거래일	지급금액 (단위 : 원)	비고 (상대방 입금자명)
1	2018. 3. 2.	3,500,000	
2	2018. 3. 3.	5,000,000	
3	2018. 3. 4.	5,000,000	
4	2018. 3. 5.	5,000,000	
5	2018. 3. 6.	1,500,000	
6	2018. 4. 8.	800,000	
7	2019. 7. 2.	700,000	
8	2019. 8. 3.	700,000	
	합 계	22,200,000	

1) 원고들은 예비적 청구취지로 '원고들의 채권액을 안분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주위적 청구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동일한 청구이므로 예비적 청구로 취급하여 판단하지 않는다.